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105호
----------	-------

2019. 9. 19.

건명	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산업건설위원회)		
제안 및 제출자	조용훈 의원 외 9명	제안연월일	2019. 9. 10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9. 11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태양광 발전시설이 제한되는 지역에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한 후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높으며,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.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의2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신설(안 별표24)

### 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